

양계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기장의무



이번 호에서는 양계업을 시작했을 때에 사업자 등록과 기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대상

양계업자는 월간 사육수수가 1만수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절차 및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3) 사업자등록의 장 · 단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세무신고를 통해 자신의 소득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 대외적인 신용도가 생겨 대출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과 농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다. 반면 세무신고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 약 8억원 정도까지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가 산출되지는 않는다.

2. 사업용계좌의 개설

1) 계좌개설 대상자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익년도 3월말까지 사업용계좌번호를 개설해야 한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 (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 (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2) 계좌의 개설방법

본인명의와 상호를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청을 하면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된 은행계좌를 개설해준다. 이미 거래하고 있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3) 사업용계좌의 사용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그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와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와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개설하고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 사용하지 않은 거래금액이 5억원일 경우 250만원(5억원 5/1,00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증빙의 수취와 장부의 작성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며 거래에 대한 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1) 계산서의 발행

전년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양계업자

는 매출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연간 발행한 계산서를 업체별로 집계하여 신고해야 한다.

2) 증빙의 수취


재화를 구입하거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증빙수취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설명할 것임).

3) 기장의무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3억원 이상이면 복식장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간편장부는 매출과 비용에 대하여 날짜순으로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복식장부는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4. 축산업자에 대한 특별혜택

모든 축산업자에 대하여 이상에서 설명한 세무상의 의무를 판단할 때 월간 사육수수 1만수(성계기준)와 연간 1,200만원의 소득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사육수수를 합친 수수 만큼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 때문에 사육수수에서 비과세되는 수수를 빼고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면 된다. 이런 기준으로 계산하면 개략적으로 사육규모가 6만수 이내의 농장은 증빙의 수취 및 기장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 및 소득원의 입증을 위해 사업자등록은 하되 영수증을 받거나 기장을 하는 것은 연간 사육규모가 약 6만수 이상인 양계업자만 해당된다고 알면 될 것이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